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4. 2. 26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.2.19. 김 수 진 의원 외 8명
- 나. 회부일자 : 2014.2.19.
- 다. 상정일자 : 제18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4.2.26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 수 진 의원

가. 제안이유

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 위탁기간을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명시하고, 사회복지시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정비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 위탁기간은 “3년”을 “5년 이내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”로 함(안 제5조제5항)
- 2) 사회복지시설 현황 정비(안 별표)

- 5번란 주관과 변경 : 복지행정과 → 가정복지과
- 9번란 시설명 변경 : 장애인주간보호센터 →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
- 15번란 신설 : 독거노인복지센터 추가

3)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9일 김수진 의원이 대표발의(발의자 9명)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18조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0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5항 중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“3년”을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, 별표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현황 일부를 정비하며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